

전주지방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가단2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미

변 론 종 결 2024. 8. 21.

판 결 선 고 2024. 9. 25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239㎡에 관하여 2017. 6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2017. 6. 27.경 피고로부터 전북 임실군 C 대 23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및 D 전 808㎡(이하 ‘이 사건 D 토지’라 한다)를 평당 15만 원에 매수하였다. 원고는 피고에게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4,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4,700만 원이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이라고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. 6. 27. 이 사건 D 토지를 대금 4,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노종찬